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6409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구합7615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주식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패소 부분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2 '경정거부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해당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1 목록" 부분은 제외하고, "별지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원고들의 주장 중 '제1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장' 부분['2. 가. 1)'항 부분], 판단 중 '원고들의 제1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부분['2. 다.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과밀부담금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과밀부담금에 관한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및 환급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과밀부담금에 관한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른 이 사건 과밀부담금의 환급은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2) 관련 법령[1)]

■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redacted]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

1)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일부 중복되나, 편의상 제2경정거부처분과 관련된 법령을 별도로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기본법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제2경정거부처분과 관련하여, ① 원고 A은 2016. 8. 2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6. 9. 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redacted]시장은 2016. 8. 26. 원고 A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과밀부담금 (19,539,405,16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 이를 납부한 사실, ③ 원고 A은 2016.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경된 세율을,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567,460,670원, 지방교육세 318,140,600원, 농어촌특별세 397,675,750원 합계 6,283,277,020원(이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사실, ④ 원고 A은 2016. 11. 29.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4,104.31㎡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구 벤처기업법 제2조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신규 지정을 받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2017. 5. 23.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이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고,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인 주차장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밀부담금 감액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특별시장은 2017. 6. 9.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과밀부담금 감액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 ⑤ 이에 원고 A은 2017. 6.경 [redacted]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밀부담금 감액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53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7.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신규 지정과 주차장 면적 산정의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밀부담금 감액경정거부처분 중 3,239,433,0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A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3.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⑥ 원고 A은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2018. 12. 31. [redacted]시로부터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9,817,746,400원(= 주차장 면적 재산정으로 인한 환급분 579,805,800원 +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9,237,940,600원)을 환급받은 사실, ⑦ 원고 A은 이에 따라 201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을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4.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주차장 면적 재산정으로 인한 환급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환급하였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제2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redacted]특별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원고 A에 부과한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사건 과밀부담금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는데,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부분이 취소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부분에 관한 관련 확정판결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위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부분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관련 확정판결(갑 제11호증의 1, 2, 3)에 따르면,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부분은 이 사건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신규 지정됨으로써 사후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경정 및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부분은 당초 적법하게 부과되었고,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에 사후적으로 과밀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경정 및 환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과밀부담금 면제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가 된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 다른 사정으로 취득행위의 법률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과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인 2016. 11. 2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신규 지정을 받았다.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사후적인 이 사건 과밀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하여 그 중 일부를 경정 및 환급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원고 A의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이 사건 과밀부담금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산입되어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행위와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과밀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유만으로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으로 인한 환급분 부분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제2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별지 1]

목 록

순번	원고	거부처분일	세목	경정거부 세액(원)
1		2018. 4. 2.	취득세	783,473,460
			지방교육세	44,769,910
			농어촌특별세	55,962,390
	합 계			884,205,760
2		2018. 4. 2.	취득세	794,188,090
			지방교육세	79,418,810
			농어촌특별세	39,709,400
	합 계			913,316,300
3		2019. 6. 4.	취득세	230,394,700[1]
			지방교육세	13,165,420[2]
			농어촌특별세	16,456,770[3]
	합 계			260,016,890

끝.

---

[1] 당초 경정청구세액 244,988,130원 – 피고 경정세액 14,593,430원
[2] 당초 경정청구세액 13,999,320원 – 피고 경정세액 833,900원
[3] 당초 경정청구세액 17,499,150원 – 피고 경정세액 1,042,380원